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224회 임시회>

2014. 2. 20.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이 재 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1. 제 안 자 : 달성군수****2. 제안이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국사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사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원 조정과 각종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추진중인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와 신규 지역현안사업의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임.

4. 예산총괄**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총 계		448,000	436,000	12,000
일반회계	계	432,000	420,000	12,000
일반회계		432,000	420,000	12,000
특별회계	계	16,000	16,000	0
의료급여기금		400	400	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7,000	7,000	0
기반시설		110	110	0
치수사업		8,300	8,300	0
농공지구관리		190	190	0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448,000	436,000	12,000	2.75
일 반 회 계	계	432,000	420,000	12,000	2.86
	지방세수입	90,500	90,500	0	0.00
	세외수입	17,480	13,945	3,535	25.35
	경상적세외수입	15,792	12,557	3,235	25.76
	임시적세외수입	1,688	1,388	300	21.61
	지방교부세	103,000	103,000	0	0.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4,041	16,200	7,841	48.40
	보조금	148,893	150,495	△1,602	△1.06
	국고보조금등	98,505	98,280	225	0.23
	시·도비보조금등	50,388	52,215	△1,827	△3.5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086	45,860	2,226	4.85
특 별 회 계		16,000	16,000	0	0.00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448,000	436,000	12,000	2.75
일 반 회 계	계	432,000	420,000	12,000	2.86
	일반공공행정	21,861	21,966	△105	△0.48
	공공질서및안전	8,168	6,921	1,247	18.02
	교육	7,355	7,423	△68	△0.92
	문화및관광	18,960	19,548	△588	△3.01
	환경보호	8,191	8,718	△527	△6.04
	사회복지	134,997	136,774	△1,777	△1.30
	보건	10,062	9,475	587	6.20
	농림해양수산	41,936	39,818	2,118	5.32
	산업·중소기업	1,613	1,613	0	0.00
	수송및교통	70,151	67,942	2,209	3.25
	국토및지역개발	30,017	28,759	1,258	4.37
	과학기술	90	90	0	0.00
	예비비	10,915	11,665	△750	△6.43
	기타	67,684	59,288	8,396	14.16
특 별 회 계		16,000	16,000	0	0.00

■ 성 질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448,000	436,000	12,000	2.75
일 반 회 계	계	432,000	420,000	12,000	2.86
	인건비	53,501	54,193	△692	△1.28
	물건비	27,830	28,570	△740	△2.59
	경상이전	181,795	176,502	5,293	3.00
	자본지출	156,927	148,042	8,885	6.00
	시설비및부대비	129,626	123,991	5,635	4.54
	민간자본이전	19,645	17,017	2,628	15.44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280	2,280	0	0.00
	공기업자본전출금	691	300	391	130.51
	자산취득비	4,685	4,454	231	5.19
	융자및출자	10	10	0	0.00
	보전재원	224	224	0	0.00
	내부거래	794	794	0	0.00
	예비비및기타	10,919	11,665	△746	△6.39
	예비비	10,915	11,665	△750	△6.43
	반환금기타	4	0	4	순증
특 별 회 계		16,000	16,000	0	0.00

5. 주요내용

□ 예산규모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60억원 보다 120억원(증 2.75%)이 증가된 4,480억원으로서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00억원 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4,320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수입이 12억 6천 9백만원,
사업수입이 19억 1천 9백만원 증액 되는 등,
총 35억 3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재정보전금의 경우는
78억 4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2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비보조금이 18억 2천 7백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2013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6억원 등
22억 2천 6백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자체사업으로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설립자본금 3억원과
 경상전출금 77억 7천 2백만원
 자본전출금 3억 9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2억 8천만원과
 가업승계 농입인 지원 7천만원
 주차위반 단속 차량 및 장비구입 1억 4천만원
 보행환경개선 한전지중화 사업 20억원
 비슬산휴양림 주차장 증설공사 9억 5천만원
 임산물 직매장 확장이전 지원 7억원
 용연사 유정당 건립 지원 5억 2천만원
 농기계수리센터 운영 2억 1천 7백만원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부족사업비 36억 5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명곡체육공원 조성사업 7억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1억 9천 2백만원과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2억 8천 8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억 5천 9백만원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1억 2천만원

FTA 피해보전사업 5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비 2억 3천 7백만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4억 1백만원

보육료 지원사업 11억 9천 6백만원

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 5억 1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현풍오산~원교간 도로 선형개량 사업과

현풍자모~구지도동간 도로 선형개량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29억 8천 4백만원이

대구시 재배정사업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의견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본예산의 2.75%인 120억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외수입, 재정보증금,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관련 예산이 81억 6천여만원으로 추경예산(안)전체의 약 68%를 차지하며 이외에 보행환경개선 한전지중화 사업비, 비슬산자연휴양림 주차장 증설공사비, 임산물 직매장 확장이전 지원비 등 자체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인 명곡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또 이번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에 대한 시의성 확보로 행정내실을 다지고 아울러 기존 추진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추경과 관련한 부서별 추경예산에 대한 타당성 판단을 위해 목별, 부기별 사업내역의 추가설명은 생략하고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4년 2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

3. 개정이유

-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폐지, 주민건강증진센터 개관에 따른 건강증진과 신설 등 행정기구 조정으로 차질없는 군정추진과 조직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시설관리공단설립으로 인한 행정기구 폐지

- 시설관리사업소 폐지(안 제2조, 제15조, 제16조)

나. 주민건강증진센터 개관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 건강증진과 신설(안 제9조)

다. 테크노폴리스 등 세무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 징수과 신설(안 제5조)

라. 국·단 및 실·과·소의 분장사무 조정 (안 제5조 ~ 제10조)

- 안전행정국장 분장사무중 “세입관리·채납정리·채납처분”을 분리
-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에 “휴양림” 추가
- 정책사업단장 분장사무중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로 변경
- 보건소장 분장사무에 “지역건강·건강생활”을 추가

마. 자구 변경 (안 제10조, 제11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

바.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소재지 변경 (안 별표 1)

- 옥포보건지소 : 폐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이전 확대)
- 무등보건진료소 : 하빈면 하빈로 734
- 고봉보건진료소 : 구지면 구지동로 47-2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폐지, 옥포면 소재 주민건강증진센터 개관에 따른 건강증진과 신설, 세무업무 증가에 따른 징수과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여 이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소재지 및 명칭변경 등을 통한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의 장인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세무과”를 “세무과·징수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과·세무조사·과표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세입관리·채납정리·채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6호 중 “공원”을 “공원·휴양림 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과”를 “보건과·건강증진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통합건강증진·예방의약·가족보건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강·건강생활·노인건강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중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제4장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세무과”를 “징수과”로 한다.

【별표 1】 (개정2007.3.2)(개정2009.4.10)(개정2009.12.30)(개정2010.2.22)(개정2010.4.12)
(개정2011.8.1)(개정2013.5.30)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달 성 군 보 건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 130길 17	달성군 일원
화 원 읍 보 건 지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94	화원읍 일원
논 공 읍 보 건 지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779	논공읍 일원
다 사 읍 보 건 지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 7	다사읍 일원
가 창 면 보 건 지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100	가창면 일원
하 빈 면 보 건 지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423	하빈면 일원
유 가 면 보 건 지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 96길 10	유가면 일원
구 지 면 보 건 지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 11길 38	구지면 일원
서재보건 진 료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18길 3-1	세천리, 서재1·2리, 방천리, 이천리, 달천리, 박곡리
봉춘보건 진 료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 52길 66	봉춘1·2리, 동곡1리
무등보건 진 료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734	대평1·2리, 무등1·2리, 기곡1·2리
반송보건 진 료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용연사길 11	기세리, 반송1·2리, 김홍 1·2·3리
음리보건 진 료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음동1길 9	봉리, 용1·2·3리, 상리, 쌍계1·2리, 초곡리, 음리, 양리1·2리
한정보건 진 료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달창로 26길 17	한정1·2·3리, 가태1·2리, 본말1·2리
대암보건 진 료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과학남로 53길 5-3	대암1·2리, 목단1·2리, 유산리, 내1·2리
징리보건 진 료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0길 46	오설리, 도동1·2리, 징리
고봉보건 진 료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동로 47-2	고봉리, 평춘1·2리, 가천리, 예현리, 웅암1·3리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장, 단장 및 실·과·소장의 직급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본청의 국장, 단장 및 실장, 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u>농업기술센터</u> 소장, 사업소의 장인 <u>시설관리사업소</u>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단장 및 실·과·소장의 직급 등) ----- ----- ----- <u>농업기술센터</u> 소장----- -----.
제5조(안전행정국) ① 안전행정국에 안전행정과· <u>세무과</u> ·회계과·종합민원과·토지정보과·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생략) 1. (생략) 2. <u>부과·세무조사·세입관리·체납정리·체납처분·과표에 관한 사항</u> <u><신설></u> 3. <u>경리·계약·계약심사·재산관리</u> 에 관한 사항 4. <u>민원·공장농지민원·건축허가·건축신고·도시건설민원</u> 에 관한 사항 5. <u>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지가정보·도로명주소</u> 에 관한 사항 6. <u>정보통계·기록물·전산·통신</u> 에 관한 사항	제5조(안전행정국) ① ----- -- <u>세무과·징수과</u> -----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부과·세무조사·과표 등에 관한 사항</u> 3. <u>세입관리·체납정리·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u> 4. ----- ----- 5. ----- ----- 6. ----- ----- 7. ----- -----

현행	개정안
제7조(건설도시국) ① ~ ② (생략) 1. ~ 5. (생략) 6. 녹지·산림조성·산림보호· <u>공원</u> 에 관한 사항	제7조(건설도시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u>공원·휴양림 등</u> -----
제8조(정책사업단) ① ~ ② (생략) 1. ~ 2. (생략) 3. <u>문화예술·체육진흥·체육시설</u> 에 관한 사항 4. (생략)	제8조(정책사업단)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u>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u> ----- 4. (현행과 같음)
제9조(설치) ① (생략) ② 보건소에는 <u>보건과</u> 를 둔다.	제9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보건과·건강증진과</u> -----.
제10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소장, 과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u>보건진료 전담공무원</u> 을 둔다. ② (생략) ③ <u>보건소장은 보건행정·통합건강증진·예방의약·가족보건·노인건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u>	제10조(소장) ① ----- ----- -- <u>보건진료소장</u> -----. ② (현행과 같음) ③ <u>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u> <u>1. 보건행정·통합건강증진·예방의약·가족보건 등에 관한 사항</u> <u>2. 지역건강·건강생활·노인건강 등에 관한 사항</u>
제11조(소관사무) ① (생략) ② <u>보건진료 전담공무원</u> 은 관할 구역안에서 「 <u>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u> 」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소관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보건진료소장</u> ----- ----- ----- -----.

현행	개정안
<u>제4장 시설관리사업소</u> <u>제15조(설치) ① 법 제1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휴양림 및 공공시설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시설관리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u> <u>② 사업소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화원휴양림길 126에 둔다.</u> <u>제16조(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u> <u>② 사업소장은 시설관리·비슬산휴양림·화원휴양림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u>	<u><삭 제></u>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4년 2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

3. 개정이유

-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른 정원증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차질없는 군정추진과 조직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총 정원 768명 (증14) (안 제2조)

1) 집행기관 : 756명 (증14)

- 일반직 증14명 (5급+1, 6급+1, 7급+2, 8급+10)

2) 의 회 : 12명(변동없음)

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안 별표2)

1) 일반직 공무원

- 전문경력관 1%이내 ⇒ 삭제

- 8급 26%이내 ⇒ 8급 27%이내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안 별표3)

1) 본 청 : 478명 (증20)

○ 일반직 증20명 (5급+1, 6급이하+19)

2) 직속기관 : 92명 (증7)

○ 일반직 증8명 (5급+1, 6급이하+7)

○ 전문경력관 감1명

3) 사업소 : 삭제 (감13)

○ 일반직 감13명 (5급△1, 6급이하△12)

4) 의회사무과, 읍 및 그 출장소, 면 : 변동없음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9조, 제30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사회복지 인력 7명, 소득세 독립세 전환 2명,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인력 확충 5명 등 14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집행기관 총 정원을 768명으로 하고 이에 수반한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및 본청, 직속기관, 읍·면 등의 직급별 정원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문 중 “754”를 “768”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42”를 “756”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0% 이내	27% 이내	8%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100%	-	-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 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768	478	12	92	89	97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40	474	12	68	89	97
3급	1	1				
4급	5	4		1		
5급	38	24	3	2	3	6
6급이하 계	696	445	9	65	86	91
연구직 계	2	2				
연 구 관						
연 구 사	2	2				
지도직 계	24			24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2			22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1	1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75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42명
2. (생략)

【 별표 2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0% 이내	26% 이내	8% 이상	1% 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 4.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768 -----

1. ----- 756 -----
2. (현행과 같음)

【 별표 2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0% 이내	27% 이내	8%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 4. (변동없음)

현행

개정안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및 그출장소	면
총 계	754	458	12	85	13	89	97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26	454	12	61	13	89	97
3급	1	1					
4급	5	4		1			
5급	37	23	3	1	1	3	6
6급이하 계	682	426	9	58	12	86	91
전문경력관 계	1			1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24			24			
지도관	2			2			
지도사	22			22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상당이하 계	1	1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 및 그출장소	면
총 계	768	478	12	92	89	97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40	474	12	68	89	97
3급	1	1				
4급	5	4		1		
5급	38	24	3	2	3	6
6급이하 계	696	445	9	65	86	91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24			24		
지도관	2			2		
지도사	22			22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상당이하 계	1	1				

소요비용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 : 14명 증원

· 일반직 증14명 (5급+1, 6급+1, 7급+2, 8급+10)

3. 소요비용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계	741,247	
인건비	573,460	
기본급	371,387	■ 5급(30호봉) : 3,976,100원 * 1명 * 12개월 = 47,713,200원 ■ 6급(25호봉) : 3,314,800원 * 1명 * 12개월 = 39,777,600원 ■ 7급(15호봉) : 2,548,000원 * 2명 * 12개월 = 61,152,000원 ■ 8급(8호봉) : 1,856,200원 * 10명 * 12개월 = 222,744,000원
정근수당	27,854	■ 371,386,800원 * 90% / 12월 = 27,854,010원
초과근무 수당	42,179	■ 5급 : 11,364원 * 1인 * 30시간 * 12월 = 4,091,040원 ■ 6급 : 9,692원 * 1인 * 30시간 * 12월 = 3,489,120원 ■ 7급 : 8,754원 * 2인 * 30시간 * 12월 = 6,302,880원 ■ 8급 : 7,860원 * 10인 * 30시간 * 12월 = 28,296,000원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정근수당 가산금	11,040	■ 25년 이상 130,000원 * 2인 * 12월 = 3,120,000원 ■ 15년 이상 80,000원 * 2인 * 12월 = 1,920,000원 ■ 5년 이상 50,000원 * 10인 * 12월 = 6,000,000원
정액급식비	21,840	■ 기준액 130,000원 * 14인 * 12월 = 21,840,000원
명절휴가비	37,139	■ 371,386,800원 * 120% / 12 = 37,138,680원
가계지원비	62,022	■ 371,386,800원 * 16.7% = 62,021,596원
물건비	30,625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05	■ 기준액 (301~600명까지) 45,000원 * 9인 = 405,000원 ■ 기준액 (100명까지) 80,000원 * 5인 = 400,000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0	■ 5급 : 100,000원 * 1인 * 12월 = 1,200,000원
직급 보조비	20,820	■ 5급 : 250,000원 * 1인 * 12월 = 3,000,000원 ■ 6급 : 155,000원 * 1인 * 12월 = 1,860,000원 ■ 7급 : 140,000원 * 2인 * 12월 = 3,360,000원 ■ 8~9급 : 105,000원 * 10인 * 12월 = 8,400,000원
특정업무 경비	7,800	■ 50,000원 * 13인 * 12월 = 7,800,000원
이전경비	137,162	
성과 상여금	42,570	■ 5급 : 3,486,100원 * 1인 * 130% = 4,531,930원 ■ 6급 : 2,997,100원 * 1인 * 130% = 3,896,230원 ■ 7급 : 2,548,000원 * 2인 * 130% = 6,624,800원 ■ 8급 : 2,116,700원 * 10인 * 130% = 27,517,100원
연금 부담금	40,142	■ 573,460,126원 * 7.0% = 40,142,209원
국민건강 보험금	16,888	■ 573,460,126원 * 2.945% = 16,888,401원
노인장기 요양보험금	37,562	■ 573,460,126원 * 6.55% = 37,561,638원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4년 2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안전행정과)

3.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근거 마련 신설(안 제5조)
- 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직종개편)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안 제6조)

5.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종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인용조문 등 관련조항을 정비함과 더불어 공무원이 여비를 부담수령할 시, 부담수령금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청렴은 시대적 소명인바, 이견 없음.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6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여비 부담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제1호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를 ““소속장관”은 “군수”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4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안전행정 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며,

제6조(종전의 제4조)제3호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를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 규칙 [별표1]”을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4조)제4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하며,

제6조(중전의 제4조)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동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 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 【별표】 ----- -----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u>소속장관</u> 은 각각 <u>군수</u> 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u>행정안전부장관</u> 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 -----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 <u>소속장관</u> ”은 각각 “ <u>군수</u> ”로 본다. 2. ----- “ <u>안전행정부장관</u> 과 협의하여”-----.

3. 제18조제1항 단서중 <u>관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u>는 「<u>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u>」 제3조로 동규정【<u>별표1</u>】은 동규칙【<u>별표1</u>】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u>국가공무원법</u>」 제71조제2항은 「<u>지방공무원법</u>」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생략) 6. 제29조제1항중 <u>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u> 및 동조 제2항중 <u>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u>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u>별표1</u>】 제2호 ‘가’ 목중 「<u>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u>」은 「<u>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u>」으로 동호의 ‘나’ 목중 「<u>공무원보수규정</u>」은 「<u>지방공무원보수규정</u>」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u>전문직공무원규정</u>」은 <u>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u>」으로 한다. 8. (생략)	3. ————— “「<u>관용차량관리 규정</u>」 제4조”는 “「<u>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u>」 제3조”로, “동규정【<u>별표1</u>】”은 “동규칙【<u>별표1</u>】”——. 4. ————— “「<u>국가공무원법</u>」 제71조제2항”은 “「<u>지방공무원법</u>」 제63조제2항”—————. 5. (현행과 같음) 6. ————— “<u>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u>” 및 동조제2항 중 “<u>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u>” 및 동조제4항중 “<u>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u>”는 없는 것으로 보며, —————. 7. <u>공무원여비규정【별표1】</u>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u>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u>」”은 “「<u>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u>」”으로, “「<u>공무원보수규정</u>」”은 “「<u>지방공무원보수규정</u>」”으로, “「<u>공무원임용령</u>」”은 “「<u>지방공무원임용령</u>」”으로, “<u>일반임기제공무원</u>”은 “<u>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u>”으로, “<u>전문임기제공무원</u>”은 “<u>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u>”으로 한다. 8. (현행과 같음)
---	--

붙임 3)

관계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국외 여행자만 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주일 이내에,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2조(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 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⑤ 외국 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27조(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하거나 병역을 면제받아 귀가하는 사람에 대한 귀가 여비와 휴가자에 대한 여비는 국방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② 전투경찰, 경비교도(警備矯導) 및 의무소방대원으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사람과 휴가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귀가 여비와 휴가자 여비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여비의 조정)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

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③ 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 <개정 2013.12.1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4년 2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안전행정과)

3.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2조 및 별표2)

5.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전임계약직 공무원”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되는 등의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 계약직 공무원인 의사”를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로 한다.

제3조 중 “제7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호에 의하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전임 계약직 공무원인 의사</u> : [별표2]의 지급구분표	2. <u>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별표 2] <u>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구분표</u>	[별표 2] <u>일반임기제공무원의</u> -----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7호 라 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 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제8호에 의하여----- ----- ----- ----- ----- -----.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 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한시임기제공무원 : 법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4년 2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주민지원과)
3. 개정이유

○ 하빈면민복지회관이 새로이 건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의 하빈면민복지회관 위치를 변경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심의 사항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복지회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회관 위치 변경(안 제2조 별표)

- 현 행 : 달성군 하빈면 동곡2리 154-3, 154-4
- 개 정 :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84길 23

나. 위촉대상자 변경 및 위원자격 규정(안 제4조제4항)

-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를 “이장 등 해당 회관 소재지 면(이하 “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로 변경

다.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임무⇒기능) 규정(안 제5조)

- 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회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원 해촉사유 항목 추가(안 제7조)

- 해당 면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마. 제10조의 “위원수당”을 “실비보상 등”으로 변경

바. 제3장의 “시설 관리”를 “시설 관리·운영”으로 제명변경

사. 제11조의 “시설 용도”를 “시설 운영”으로 내용 전면개정

아. 강사 조항 신설(안 제14조)

- 회관의 프로그램 기능 수행 강사 활용 규정 신설

자. 관리계획 등 보고 규정(안 제15조)

- 제1항 관리계획 변경 및 제2항 운영결과 보고 규정 신설

차.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규정 전면 개정(안 제20조)

- 명확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에 대한 규정 마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4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4항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하빈면민복지회관이 신축됨에 따른 조례제명 변경, 위치변경과 더불어 위원 자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과 동시, 위원 임무 및 심의사항, 관리계획보고,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규정의 개정, 강사 조항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하빈면민복지회관의 자율성 확보와 운영내실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설치) 군수는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로 회관을 설치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회관 소재지 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관 소재지의

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이장 등 해당 회관 소재지 면(이하 “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면장은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특정 성(性)이 전체 위원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및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면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해당 위원이 유관기관대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해당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때
4. 해당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한 경우 즉시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등) 공무원을 제외한 운영위원회 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설 관리·운영

제11조(시설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종류, 내용 및 변경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면의 제반 상황 및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면장이 정한다.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면장이 그 관장의 직을 겸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규정된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강사) 회관에서 정한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

를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관리계획 등 보고) ① 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 2월 전까지 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회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이 포함된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반기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 및 회계) ① 회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수강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면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사용

제17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허가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용료 결정) 제20조에 따른 사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사용료 등) ① 회관의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③ 사용료는 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면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운영위원회가 징수한다.

④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하여, “사용료”의 경우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면장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⑤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징수된 “수강료”는 운영위원회가 면장과 협의하여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제21조(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제22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3조(권리양도 제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 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위탁관리

제25조(위탁) ① 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회관의 명칭	위 치
하빈면민복지회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84길 23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지방자치법 제14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4년 2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농업정책과)
3. 제정이유

○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 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회 구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달성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대행
- 위원회 기능
 -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 기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

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40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은 달성군에서 농업경력이 3년 이상인 가업승계 농업인

다.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안 제5조)

- 농업생산시설 설치, 장비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시 가산점 부여
-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
-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5.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후계농업 경영인 또는 전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육성을 주문하고 있으며, 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을 건전하게 보존, 육성키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가업승계 농업인에게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 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달성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1.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40세 이하의 농업인
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은 달성군에서 농업경력이 3년 이상인 가업승계 전업 농업인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생산시설 설치, 장비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
2.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시 가산점 부여
3.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
4.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① 가업승계 농업인이 특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3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 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

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된 때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 휴대폰		
	주소							영농경력	년	
	가족수		연간농가소득	만원			생활수준	상, 중, 하		
	부모성명		주민등록번호				영농경력	년		
신 청 내 용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및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기타				
	특기사항									

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업인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사업지 :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농규모(㎡)	
농업시설 현황(동/㎡)	
농기계 현황(대)	

2. 사업계획

- ☐ 사업내용
-
- ☐ 세부사업별 소요액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량	단가	사업비(천원)
계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				

※ 자부담금 조달계획 :

- ☐ 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대효과 (신청 사업분야)

(단위 : m², 두, 천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계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4년 3월 ~

나. 주요내용

-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특별 보조금 지원으로 농업인에 대한 소득증대 및 자긍심 고취

2. 비용 발생 요인

- 농업인에 대한 특별 보조금 지원(민간자본보조)

3. 관련조문

-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업생산시설 설치, 장비 구입을 위해 특별보조금 지원

나. 추계 결과

- 지원농업인 10명 × 10,000,000원 × 70%(보조율) = 70,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반영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주민복지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권성열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총 계
세 입							
세 출							
민간자본보조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군 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붙임 2)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어가(家族農漁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어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4년 2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정책사업과)

3. 제정이유

-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과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으로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나.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및 기능(안 제4조 ~ 제5조)
- 다. 작은도서관 설립 및 위탁(안 제6조)
- 라. 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안 제8조)
- 마. 작은도서관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안 제9조 ~ 제10조)
- 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등(안 제13조 ~ 제18조)

5. 관계법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제5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육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21세기 문화 및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접근성으로 독서문화와 지식정보의 습득을 통한 문화생활을 쉽게 향유 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도농복합지역의 광활한 우리군 특성상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44조 및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 기반 시설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공립작은도서관 및 본 조례 제8조에 의해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3.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당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의 최소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열람석은 6석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3. 도서관 자료는 1,000권(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신규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 및 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활동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6.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사업

제6조(설립 및 위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등록 신청서에 운영계획서 및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관리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지원범위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작은도서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기타 운영비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0조(지원기준 등) ① 군수로부터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공중에게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용도서관이어야 한다.
2. 주 5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3. 주민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더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 충족 여부 및 제8조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제9조, 제10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의 선정 및 지원 규모를 달리 할 수 있다.
- ③ 공중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은 지원하지 아니 한다.
- ④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운영자의 직무 등)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 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주민의 작은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지는 인력이 작은도서관에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독서지도자,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수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12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자원봉사단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서관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구성 시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달성군의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달성군의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달성군의회 의원 1명, 작은도서관 운영자 2명, 작은도서관

에 대하여 학식이 있거나 전문가인 지역주민 2인으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달성군의 작은도서관 업무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 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은 회원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만 도서 등의 자료를 대출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 하며 1회 3권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대출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속 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한다.

제20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관제한이나 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자
3.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1조(기증자료) 작은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자료대장에 기록한 후 열람 또는 대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이관 등) 작은도서관 내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타 도서관에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붙임 2)

관계법령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4년 2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시설관리사업소)
3. 개정이유

○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는 체육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규정, 정비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사용료 감면율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특히 가임기 여성수영 월회원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달성스포츠파크, 강변야구장, 하빈지구 체육시설, 명곡체육공원을 체육 시설로 규정(안 제2조)하고, 위치·명칭 규정(안 제3조)
- 나. 달성스포츠파크, 강변야구장, 하빈지구 체육시설, 명곡체육공원 사용료 신설(안 제11조)
- 다. 테니스장 사용료 징수시설 확대(안 제11조)
 - 다사·가창체육공원내 테니스장, 논공축구장내 테니스장, 군민 운동장 내 테니스장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훈대상자·등록장애인·유공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안 제14조)
- 마. 국민체육센터 가임기 여성수영 월회원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안 제14조)
- 바. 히딩크드림필드 풋살장 사용료 (안 제11조) 및 감면조항 신설(안 제14조)

5.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을 앞두고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시설명칭 규정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과 여성수영 월회원의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사회적 형평성 확보와 주민편의 도모 및 이관 후, 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테니스장 등”을 “테니스장, 명곡인라인스케이트장, 화원게이트볼장, 다사체육공원, 가창체육공원, 달성스포츠파크, 달성강변야구장, 명곡체육공원, 하빈지구 체육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중 “사용내역·관람권 내역”을 “사용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이용(연습사용)하고자”를 “사용하고자”로, “이용(연습)료를 납입하고 이용(연습)권”을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적용시간
조기	05:00~09:00
주간	09:00~19:00
야간	19:00~23:00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1.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 (별표 2)
2.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 3)

제11조제1항의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전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전액

같은 항 제3호 중 “경기”를 “경기 : 100분의 80”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행사”를 “행사 :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훈대상자·등록장애인·유공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 100분의 50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인정할 때”를 “인정할 때 : 전액”으로 한다.

같은 항에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민체육센터 여성수영 월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可妊) 여성 : 100분의 10

7.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 전액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강습에 의한 월 사용료는 강습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강습 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중 “테니스장”을 “회원·다사테니스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 조례 제25조에 의거 회원읍장 및 다사읍장이 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가 관리·운영중인 회원테니스장 및 다사테니스장에 대하여는 각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 조례 [별표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조례 제25조는 제1항 각 테니스장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관련)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국 민 체 육 센 터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228-2번지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군 민 운 동 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10	- 축구장, 정구장, 배구장(족구장), 게이트볼장
군 민 체 육 관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30	
논 공 축 구 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0	- 축구장(풋살장), 테니스장
화 원 테 니 스 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58	
다 사 테 니 스 장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754	
화 원 게 이 트 볼 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253	- 게이트볼장
다 사 체 육 공 원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441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히딩크드림필드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외무대, 산책로
가 창 체 육 공 원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604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지압보도
명 국 체 육 공 원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12	-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인공암벽, 다목적운동장(축구장)
달 성 스포츠 파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228-2번지	-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달 성 강 변 야 구 장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552-1번지	- 야구장4면, 선수대기실
하 빈 지 구 체 육 시 설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200-3번지	- 야구장2면, 축구장 1면 농구장6면, 족구장 4면

※ 명국체육공원의 관리부서는 공원녹지과, 하빈지구 체육시설의 관리부서는 치수방재과로 한다.

【별표 2】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군 민 체 육 관			주간 (4시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 간 (4시간)	30,000	45,000	60,000	90,000
가 창 체 육 공 원	축 구 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다 사 체 육 공 원	축 구 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히 딩 크 드림필드풋살장		주간 (1시간)	35,000	45,000	105,000	135,000
명 국 체 육 공 원	인 라 인 스 케 이 트 장		주·야간	-	-	-	-
	다 목 적 운 동 장 (축구장)		주간 (2시간)	63,000	90,000	180,000	270,000
			야 간 (2시간)	90,000	135,000	270,000	405,000
군 민 운 동 장			주·야간	-	-	-	-
논 공 축 구 장	축 구 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풋 살 장		주간 (1시간)	35,000	45,000	105,000	135,000
			야 간	45,000	55,000	135,000	165,000
강 변 야 구 장			주간 (4시간)	90,000	140,000	180,000	280,000
달 성 스포츠파크	주 경 기 장	축구장	주간 (2시간)	140,000	200,000	400,000	600,000
			야 간 (2시간)	200,000	300,000	600,000	900,000
	보 조 경 기 장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하빈지구 체육시설	야 구 장	주간 (4시간)	70,000	100,000	140,000	200,000
	축 구 장	주간 (2시간)	35,000	50,000	100,000	150,000
	농 구 장	주·야간	-	-	-	-
	족 구 장	주·야간	-	-	-	-
테니스장 (화원, 다사, 가창체육공원, 다사체육공원, 군민운동장, 달성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내)	주간 (1시간)		면당 6,000	면당 8,000	면당 12,000	면당 16,000
	야간 (1시간)		면당 12,000	면당 14,000	면당 24,000	면당 28,000
	월회원(1인 1개월기준)		면당 30,000		-	-
	단체	주간 (1개월, 1일3시간)	300,000	-	-	-
		야간 (1개월, 1일3시간)	120,000	-	-	-
비 고		1. 조기 사용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2.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전용사용료의 4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주간에 한함) 3.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 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단, 축구장 및 야구장 주간사용료에만 적용함) 4.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5. 히딩크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6. 명곡체육공원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

시설명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일 입장 요금		
달성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3회	주 2회	성인	중고 생	유아 초등
		77,000	53,900	38,500	69,300	49,500	38,500	63,800	46,200	33,000	53,900	38,500	3,300	2,200	1,650
	헬스장	월 55,000원													
비 고	1.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체육시설”이란 국민체육센터, 군민운동장, 군민체육관, 농공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 ----- ----- ---- 테니스장, 화원게이트볼장, 다사체육공원, 가창체육공원, 달성스포츠파크, 달성강변야구장, 명곡체육공원, 하빈지구 체육시설 등-----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강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삭 제>
5. “관람자”란 전용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를 유료관람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삭 제>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1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8. “기본액”이란 별표 중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삭 제>
9. ~ 15. (생략)	9. ~ 15.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 ① (생략)

②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관람권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연습)료를 납입하고 이용(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하절기	동절기
조기	05:00~ 08:30	06:00~ 09:30
주간	08:30~ 19:00	09:30~ 18:00
야간	19:00~ 23:00	18:00~ 23:00

② ~ ③ (생략)

제11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별표 2], 이용료[별표 3], 부대시설사용료[별표 4],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별표 5]등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② (생략)

③2인이상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른다.

④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설 사용의 종료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용내역 -----
-----.

③----- 사용하고자 -----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
-----.

제10조(사용시간) ①-----

구분	적용시간
조기	05:00~09:00
주간	09:00~19:00
야간	19:00~23:00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1.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 (별표 2)
2.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 3)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2조(관람권에 의한 사용료)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금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사용료(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u>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불우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노인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행사 5. 상설 스포츠교실의 운영 <신 설>	<삭 제>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 ----- <u>사용료</u>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전액 2.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전액 3. 불우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노인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 : 100분의 80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행사 : 100분의 40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훈대상자·등록장애인·유공자(국가유공자·독립 유공자·5.18민주유공자) : 100분의 50 6. 국민체육센터 여성수영 월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可妊) 여성 : 100분의 10
---	---

<u><신 설></u>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u><신 설></u> ② 군수는[별표 2]의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중 논공축구장을 이용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관내 각급학교에서 운영 중인 축구부에 대하여 월 3회 범위내에서 축구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u><신 설></u> ② (생략)	7. <u>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 전액</u>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전액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군수는[별표 2]의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중 논공축구장을 이용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관내 각급학교에서 운영 중인 축구부에 대하여 월 3회 범위내에서 축구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강습에 의한 월 사용료는 강습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강습 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u> ② (현행과 같음)
---	--

제20조(입장권) ① <u>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기 및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u> 2. <u>경기(행사)의 주최측 임원·지도요원·출전선수와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의 체육관련 출입자</u> 3. <u>각급학교 교내 체육대회 개최시의 해당학교 교사 및 학생</u> 4. <u>전용 사용자측의 행사요원</u> 5. <u>보호자가 있는 6세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u> 6. <u>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u> ②제1항의 입장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삭 제>
제21조(매표 및 검인) ① <u>관람권 등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시설에서 매표한다.</u> ②<u>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홍보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u>	<삭 제>
제25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체육시설인 <u>테니스장에</u> 관한 관리·운영 권한을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 -----<u>회원·다사 테니스장</u>----- ----- --.

붙임 3)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
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끝.